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고 일 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사무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08. 1. 1. 기구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 조문내용 중 “생명산업추진단장”을 삭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생명산업추진단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삭제 [생명산업추진단(사업소) 폐지로 위임대상기관에서 제외 됨]

나. 부서별 주요내용

- 지역개발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 사무로 신설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사무”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건설정책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 권한 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삭제함

○ 청소년아동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청소년 사무 관련 위임 사무가 도지사 권한 사무에서 시장·군수 권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무 삭제

○ 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에 따라 대기배출업소 인·허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삭제된 사무, 사무명칭 등이 변경된 사무 등) 및 근거법령을 정비함

-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의 사용승인 위임사무 삭제
- 청문(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위임사무 삭제
-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인정 삭제
-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 행정조치 관련 사무 삭제 등

○ 수질관리과

“공공하수도 설치 관련사무”가 그간 도사무(하수종말처리시설)와 시·군 위임사무(하수종말처리시설외)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조정하여 도지사 권한 사무로 일원화하고자 시·군 위임사무를 삭제함

4.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의 개정,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사무권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행정 권한과 책임을 일

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지역개발팀 소관사무 중 2007년 4월 11일 도시개발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민간 도시개발사업(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자 지정 및 지도·감독 사무를 이미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무와 권한 및 책임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시군에 위임하고

도시개발법

제 19조의2(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지정권자는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 25조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4.11]

건설기술법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發注廳"이라 함은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 을發注 하는國家, 地方自治團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가 納入資本金 의 2% 의 1 이상을出資한 企業體의 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말한다.

건설정책팀 소관사무 중 2007년 5월 17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도지사 사무에서 국가사무(국토해양부장관)로 변경된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 정 전	개 정 후
제 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청소년아동과 소관사무 중 2004년 2월 9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업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환경과 소관사무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의 개정예 따라 대기배출업소 인·허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중 삭제된 사무, 사무명칭이 변경된 사무 및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고

수질관리과 소관사무 중 2006년 9월 27일(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설치 관련사무가 도지사 사무로 일원화됨에 따라 시군에서 처리하던 하수종말처리시설외 공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p>第 26條의2(修鍊施設 許可의 요건) ①(생략) ②市·道知事는 第 26條第 2項 또는第 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許可를 하거나 登錄證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修鍊施設이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요건 중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補完할 것을 조건으로 許可하거나 登錄證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9.1.18></p>	<p>제 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② 삭제 <2007.7.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공하수도 관련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없음.

하수도법

개정전	개정후
<p>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下水道"라 함은 下水(農作物)耕作으로 인한 下水는 제외한다 물排除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設置되는 下水管渠, 下水終末處理施設, 기타의 工作物과 施設의 總體를 말한다.</p> <p>2의2. "公共下水道"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관리하는 下水道를 말한다.</p> <p>第 6條(認可등) ①地方自治團體가 第 條의2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整備基本計劃에 따라 下水終末處理施設(下水終末處理施設에 직접 연결된 下水管渠 및 펌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고, 市長(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제외한다)·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下水終末處理施設 외의 公共下水道를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된 事項을 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82.12.31, 1994.8.3, 1997.3.7, 1999.2.8></p>	<p>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p> <p>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p> <p>제 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부칙 <제8014호, 2006.9.27></p> <p>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붙임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